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원천납부세액명세서(갑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 번호	

원천징수 명세내용

[illegible]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2. ① 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, 정기에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라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① 적요사유별 및 ②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.
4. ② 원천징수의무자란은 원천징수의무자(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)를 기준으로 내국인(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,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내국법인), 외국인으로 적습니다.
5. ② 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란에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6. 일반법인의 경우 ⑥ 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"원천납부세액명세서[별지 제10호서식(을)]"의 ⑪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㉞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7.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 적요란에 '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'이라 구분하여 적고, ②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, ⑥ 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원천징수 세액명세

①채권등의명칭 (액면금액)	②유가증권 표준코드	③채권이자 구분	④취득일	⑤매도일	⑥보유기간 (이자계산일수)	⑦이자율	⑧=①×⑥×⑦ 보유기간이자 상당액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()							

⑨원천징수의무자 (사업자등록번호)			⑩세율	⑪법인세	⑫납부일 (징수일)
구분 [내국인, 외국인]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상 호(성명)			
합 계					

작성 방법

-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·지방채·회사채·예금증서·개발신탁수익증권·투자신탁수익증권·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, ()에는 액면가액(권면금액)을 적습니다.
-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.
- ③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3호서식(1)]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.
-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·유상이체일·발행일·매출일·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.
-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·이자지급약정일·유상이체일·상환일·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.
-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만,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.
-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(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)에 발행 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,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. 다만,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.
- ⑧원천징수의무자 구분란은 원천징수의무자(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)를 기준으로 내국인(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,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), 외국인으로 적습니다.
-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란에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- ⑩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,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.
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.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()로 표시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,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.
- 일반법인의 경우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"원천납부세액명세서[별지 제10호서식(갑)]"의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⑫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, () 안의 금액은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별지 제8호서식(을))"의 ⑬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.